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342 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완구 안전기준에 관련 국제규격(ISO 8124, EN 71, ASTM F963)의 최신 내용 및 국내 유관단체의 개정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완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개정(안) 내용

- 관련 국제규격(ISO 8124, EN 71, ASTM F963)의 최신내용 반영
 - 현 9개 part(부) 중 제5부(유아용 실내그네), 제6부(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등)를 통합하고(ISO, ASTM 반영), 화학실험 세트관련 제6~8부의 3개 part를 추가하고(EN반영) 기타 편집상의 오류를 수정보완
- 국내 유관단체의 개정요구사항 반영
 - 전동완구 어댑터의 충전상태 표시등(LED) 의무화(제2부 내)

및 네일아트의 방부제 기준강화(제9부 내) 등

※ 세부내용은 [별첨 1]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완구 부(part)별
주요 개정내용 요약표 참조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별첨 2] 자율안전확인기준-부속서 36- 완구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1. 9.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
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427-723)

○ 전화 : 02-509-7246~9, ○ 팩스 : 02-509-7302